

## 광주소방서 대체인력(영양사) 채용 공고

경기도 광주소방서 영양사(대체인력)를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9월 16일

경기도 광주소방서 장

###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 영양사
- 담당업무 : 급식 영양관리, 위생관리 등 식당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채용인원 : 1명

### 2. 근무조건

- 신 분 : 기간제 근로자(대체인력)
- 근무시작(예정)일 : 면접진행 후 근무시작일 협의
- 계약기간 : '22. 10. 11. ~ '23. 01. 19. / 3개월
  - ※ 기존 공무원의 휴직사용으로 인한 대체근로자 채용으로 휴직자 기간연장 혹은 조기복귀 등에 따라 계약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일 : 주 5일
  - ※ 단, 휴일 근무계획에 따라 토·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오전 09:00 ~ 오후 18:00 / 휴게시간 13:00 ~ 14:00)

※ 1일 근무시간(8시간)에는 휴게시간이 제외되어 있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장소 : 광주소방서 (경기도 광주시 무들로 112 광주소방서 )

○ 보수 및 복무 :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 및 「경기도 공무원등 운영 규정」 준용

○ 후생복지

- 명절휴가비 (500천원 / 근무 시), 건강검진비(최대 40만원), 복지포인트(5만원 / 월)

○기 타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등

### 3. 응시자격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인 자

※ 단, 남자의 경우 근무기간 중 복무에 임하지 않는 자

○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이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직종	자격조건	우대요건
영양사	- 영양사 <b>면허증</b> 소지자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거 면허를 취득한자	- 조리사 <b>면허증</b> 소지자 - <b>집단급식소 1)</b> 영양사 근무경력자 - 사무관련 <b>자격증</b>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 자격증 가점(최대 10점) <- 서류심사에만 한함

- 조리사 : 5점
- 컴퓨터활용능력 : 2급(2점), 1급(5점) \*다수 보유 시 높은 점수 1가지 점수만 부여
- 워드프로세서 : 5점 \*워드프로세서는 보유자격 구분 없음

- 응시결격사유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세부사항은 6. 유의사항」 참조

**「식품위생법」 관련법령**

**【법 제40조(건강진단)】**

-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규칙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제10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경기도 공무원 등 운영 규정」 제10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써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4. 채용방법 및 일정

### ○ 채용일정 개요

공고기간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및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2. 9. 19.(금) ~ 10. 3. (월)	'22. 9. 19.(금) ~ 10. 3. (월)	10. 4.(화)	10. 7.(금)	10. 8.(토)

☞ 근로계약서 체결 : 합격자 발표 후 작성

### ○ 원서접수

○ 기 간 : 2022. 9. 19.(금) 18:00 ~ 10. 3. (월) 18:00

○ 방 법 : 기간제 근로자 스마트 채용 통합접수시스템」 이용 접수

① 인터넷 통합접수시스템」 검색 > 기간제 채용관 > “광주” 검색

② 해당페이지 내 “신청” 카테고리 이용 신청 (회원가입 필수)

※ 응시원서 등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 서류심사

- 심사일자 : 접수인원 발생 시 개별통보

- 심사방법 : 경력사항, 가점 및 심사항목에 대한 이상 유무

- 심사항목 : 제출서류 종류, 채용 자격조건, 우대요건, 허위기재 여부 등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개별통보 및 통합접수 시스템」 ‘공지’ 카테고리에 게시

### ○ 면접심사

- 면접일자 : 서류심사 진행 후 개별통보

- 평가방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정요소별)

① 공무직으로서 정신자세 / ② 업무지식 및 응용능력 / ③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최종 합격자 발표 : 별도공지
- 근로계약서 체결 : 근무시작일

## 5.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붙임양식을 사용하여 「통합접수시스템」에 등록 (첨부)하기 바람

###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필수) 응시원서 1부(별지1호 서식)
- (필수) 이력서 1부(별지2호 서식)
- (필수) 자기소개서 1부(별지3호 서식)
- (필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별지4호 서식)
- (필수)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및 서약서(별지5호 서식)
- (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원본,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필수) 주민등록초본 1부(원본, 병역사항 포함\_남성에 한함)
- (필수) 영양사 면허증(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조리사 면허증(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증명서(원본) - 각 기관발급용 1부

### ○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필수) 신분증 지참
- (필수) 공정채용 확인서(별지6호 서식)
- (추후제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병원 발급분)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인정되며 경력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 최종합격 후 제출하는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안내

## 6.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자격 미달, 거주지 제한 미확인,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즉시 폐기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후 시행합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 후 응시자격 미충족이나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통합접수시스템」 및 광주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소방서 소방행정과 (☎031-799-221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본인은 경기도 광주소방서 영양사(대체인력)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아래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응시번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주택)    (핸드폰)
응시직종	영양사 (대체인력 근로자)
주소	
e-mail	

광주소방서 장 귀하

## 응 시 표 ( 대체인력근로자 ) 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종	영양사	응시기관명	광주소방서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2022년    월    일 광주소방서 장				

###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광주소방서 2층 소방행정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 당일은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사전 통지된 시각까지 시험 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이력서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e-mail	
주소				
학 력	기간	학 교 명(고교 이상)		전 공(학위)
	0000년 00월 00일	00학		박사
경 력	기간	근 무 처(부 서)	직 위(급)	업무내용
	00기업(00팀)		대리	
	00상사(00과)		과장	
자 격 사 항	취득년월일	자격 · 면허증		시행처
	00기술사	0000년 00월 00일		
<p>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flex-end;"> <div style="text-align: right;"> <p>성 명:</p>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p>2022년    월    일</p> <p>(인)</p> </div> </div>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p>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p>	<p>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p>
<p>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시한 대체인력 채용시험 자료로 활용 ⇒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임용 결격사유 확인 등</p> <p>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p> <p>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서류 보존기간 완료시까지</p>	<p>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시한 대체인력 채용시험 자료로 활용 ⇒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임용 결격사유 확인 등</p> <p>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p> <p>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서류 보존기간 완료시까지</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p>
<p>성명 : . . . (인)</p>	<p>성명 : . . . (인)</p>

경기도 광주소방서 장 귀하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및 서약서

본인은 경기도 광주소방서 에서 시행하는 2022년 대체인력(영양사)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응시요건 해당사항 및 제출 서류(거주지 확인, 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 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경기도 광주소방서 장 귀하

## 공정채용 확인서

※ 본 확인서는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18.11.1.)」에 따라 채용자의 공정채용을 확인하는 사항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기 본인은 최종합격일 발표 이후에라도 채용과정에 채용비리 등 부정 합격 사실이 발생할 경우,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합격취소, 임용취소 및 면직 처리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광주소방서 장 귀하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 (031-280-8759) 또는 이메일 (zero571@gg.go.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4.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2년 8월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2년    월    일

광주소방서

## [별지7호 서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 광주소방서 장 귀하

###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